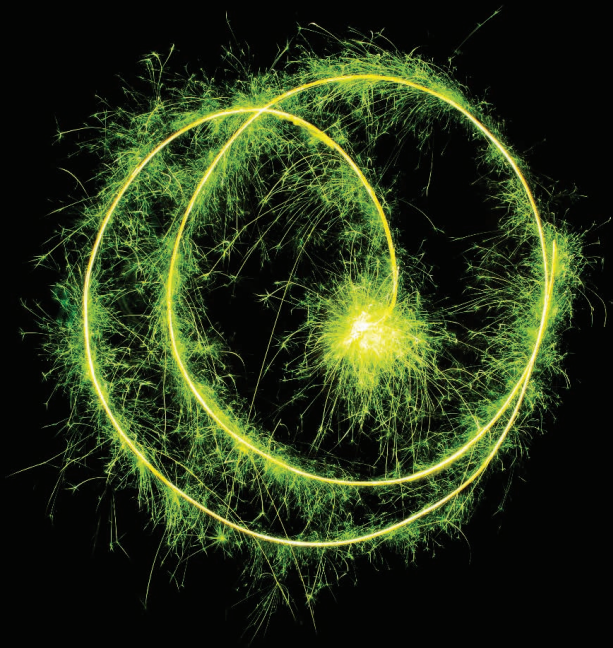


Deloitte.



세무 및 투자 가이드 Indonesia

Deloitte Tax Solutions

본 출간물은 2016년8월23일자로 유효한 법령 및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동 자료들은 Deloitte Tax Solutions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특정 주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출간물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하며, Deloitte Network의 어떤 법적 실체도 동 출간물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귀하의 사업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동 출간물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Deloitte Network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 출간물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시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Deloitte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목차

제 1 장 딜로이트 소개	4
제 2 장 조세기본법 (General Indonesian Tax Provisions)	6
제 3 장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12
제 4 장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23
제 5 장 원천징수세와 최종분리과세 (Withholding Tax and Final Tax)	27
제 6 장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37
제 7 장 부동산세 (Land and/or Building Tax and Duties)	45
제 8 장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47
제 9 장 이중과세방지협약 (Summary of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s)	56
제 10 장 조세사면 (Tax Amnesty)	65
Contacts	69
Notes	70

제1장 딜로이트 소개

딜로이트는 다양한 산업의 국영 및 민간 기업고객에게 회계감사, 세무, 컨설팅,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150여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포춘 500대 기업 중 약 5분의4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245,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전문가들은 시장과 고객에게 제공할 높은 가치, 서로에 대한 의무, 문화적 다양성에서 비롯된 강점을 강화시키는 공동 문화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을 경험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는 이러한 환경을 즐깁니다. 딜로이트의 전문가들은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체 내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헌신합니다.

딜로이트 동남아시아

딜로이트의 회원사인 딜로이트 동남아시아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괌,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딜로이트 동남아시아는 25개 지점에 소속된 270명의 파트너와 7,300명의 전문가들의 전문성 및 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계감사법인 Osman Bing Satrio & Eny (OBS&E)
- 세무자문법인 Deloitte Tax Solutions (DTS)
- 재무자문법인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DKI)
- 경영컨설팅법인 PT Deloitte Consulting

현재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명의 파트너 및 이사와 1,200명의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상장사, 다국적대기업, 공공기관, 고성장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세무자문법인인 Deloitte Tax Solutions (이하 DTS)는 고객의 성장을 돕고 고객의 사업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TS는 복잡한 인도네시아의 세법 및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TS의 세무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자신들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세법의 미로를 통과하도록 고객을 안내합니다.

- Business Tax Service (영업세 자문)
- Cross-border Tax (국가간조세 자문)
 -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조세 자문)
 - Mergers and Acquisitions (인수합병 자문)
 -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자문)
- Global Employer Services (해외주재원 세무 자문)
- Indirect Taxation (간접세 자문)
 - VAT (부가가치세 자문)
 - Customs and Global Trade (관세 자문)
- Business License and Establishment Services (사업허가 및 법인설립 자문)
- Business Processing Solutions (사업 프로세싱 자문)

DTS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Financial Services Industry (금융업)
- Energy and Resources (에너지&자원 산업)
-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소비자&공산품)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첨단기술, 미디어&통신 산업)
- Life Science and Health Care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 Infrastructure and Capital Project (인프라 및 자본프로젝트)
- State Owned Enterprises (공공기관)
- Dispute and Resolution (분쟁해결)
- Japanese Service Group (일본 서비스 그룹)
- Korean Service Group (한국 서비스 그룹)
- Chinese Service Group (중국 서비스 그룹)

제2장 조세기본법

(General Indonesian Tax Provisions)

2009년 No. 16 조세기본법(개정후) 1983년 No. 06 조세기본법(개정전)

Residency (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 과세를 거주를 토대로 결정된다. 거주자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개인 납세의무자(거주자)는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두거나
 -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거나
 - 과세 기간에 인도네시아에 체재하고 거주할 의지가 있는 자
- 법인 납세의무자(거주자)는 법인이 있는 장소나 주소 혹은 관리하기에 효과적인 장소를 토대로 결정된다.

Basics of the Tax System (세법 체계의 기초)

-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원칙으로 납세자는 세무신고를 한다.
- 기업그룹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룹 내 법인들은 개별적으로 납세신고를 한다 (즉, 연결납세제도가 아닌 개별납세제도).
- 회계연도 2008년부터 제척기간은 5년이며 형사법위반 해위에 근거한 경우 10년이다.
- 인도네시아는 개인과 법인 납세자에게 광범위한 세금을 부과한다. 그 세금은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 a. 다음과 같은 소득세
 - 법인 소득세
 - 개인 소득세
 -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세
 - 제3자에 대한 다양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 b.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LGST)는 특정 기준을 따른다.
 - c. 토지 및/또는 건물세는 특정 기준을 따른다.

Income Recognition (소득 인식기준)

- 인도네시아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특정기준하에 거주자들의 국외소득에 적용 가능하다).
-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며,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tax treaties)하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를 받는다.

Compliance Timetable (신고납부 기한)

세목	월별 납부기한	월별 신고기한	연도별 신고기한 ^{*(1)}
법인소득세	익월 15일까지	익월 2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2)}
개인소득세	익월 15일까지	익월 2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원천징수세-급여	익월 10일까지	익월 20일까지	해당사항 없음.
원천징수세-기타	익월 10일까지	익월 20일까지	해당사항 없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3)}	익월 말일까지	해당사항 없음.

(주):

- 미납 세금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국세청(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DGT)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고기한이 익월 15일까지인 역외공급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Self-assessed VAT)과 재무부(State Treasurer)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

Administration, Books and Records (장부관리)

- 일반적으로 장부 및 전표(전산 포함)는 루피아와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되고,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US 달러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PMA),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PE), 해외 계열사나 외국납세자를 둔 특정기업은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얻어 영어와 US 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생산물분배계약(Contractors of oil and gas Production Shring Contracts, PSC) 및 도급계약 (Mining Contracts of Work, MCS)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은 서면 통보만으로도 영어와 US 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장부 작성방법의 변경은 DGT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 과세 목적상, 납세자 장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는 법률상 필요하지 않다.
- 하지만 납세자가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과세당국은 세무신고 시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Tax Audits (세무조사)

- DGT는 제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세무신고서상 과다납부가 신고된 경우(즉, 환급 포지션),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수행된다.
-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모든 자료 및 서류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되지 않은 자료 및 서류는 향후 이의신청 절차(Tax objection process)가 진행될 때에도 납세자를 위해 고려되지 않는다.
- 만일 세무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여전히 어떤 조정의 법적 근거에 관한 불복(dispute)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례를 지방 국세청의 품질보증팀(Quality Assurance Team)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 DGT는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차이 없음, 과소납부 또는 과다납부(환급) 여부를 포함한 과세부과결정서(Tax Assessment Letter)를 발행한다.

Tax Disputes – Objection process (조세불복 – 이의신청)

- 납세자는 세무서의 과세부과 결정에 대하여 과세부과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DGT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서(Objection Letter)를 제출하기 전 최소한 세무조사의 종료회의(Closing Conference)에서 합의된 추가 납부세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 만일 DGT로부터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부분 인정받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서 제출 당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가 가산세(Tax Penalty)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납세자가 조세법원(Tax Court)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유예된다.
- DGT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DGT가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납세자의 이의신청은 인정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Tax Disputes – Appeal process (조세불복 – 심사청구)

- 납세자는 DGT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를 위하여 납세자는 심사청구 전까지 최소한 미납세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항소시 청문회를 열어 항소를 제기한 지 12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정한 상황하에서는 그 기한이 3개월까지 더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 대법원이 항소를 부분적으로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신청한 시점에 미납세액의 10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소송

- 납세자나 DGT는 조세법원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러한 소송제기는 특정한 조건에서 가능하며 자동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 소송 서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소송제기로 인해 조세법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은 연기되지 않는다. (납세자에 대한 이자보상 포함)
-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하면 납세자의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Tax Penalties and Sanctions (가산세 및 제재)

구분	가산세 및 가산금 (Penalties and Surcharges)
지연신고시	부가세 월별신고: Rp 500,000 기타 월별신고 및 개인소득세 연도별신고: Rp 100,000; 법인소득세 연도별 신고: Rp 1,000,000
일반적인 지연납부시	매월별 2%
과세부과결정서에 의한 과소납부시	과소납부세액의 월 2%(최대 24개월)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 또는 100% 가산금 (경우에 따라 다름)
자진 수정신고시	과소납부세액의 월 2%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 또는 150% 가산금 (경우에 따라 다름)

구분	가산세 및 가산금 (Penalties and Surcharges)
VAT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미발급/ 지연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불일치 신고시 (지연신고시)	과세표준의 2%

Criminal Sanctions (형사 제재)

구분	벌금 및 구속
과실에 의한 무신고시, 부실신고시, 부실정보 첨부시	미납세액의 1~2배의 벌금 또는 3개월~1 년간 구속
납세자번호(NPWP) 및 부가세신고번호(PKP) 의 고의적 미등록시, NPWP 및 PKP의 남용시, 세금 무신고시, 세금 부실신고시, 세무조사 거부시, 장부 미작성시, 장부, 전표 및 증빙서류를 인도네시아에 미보관시, 허위 장부/전표, 원천징수 또는 징수한 세금 미납부시	미납세액의 2~4배의 벌금과 6개월~6 년간 구속
올바른 NPWP나 PKP 없이 사용하거나 남용시, 또는 세금의 환급, 보상 및 공제를 받기 위해 부실신고나 부실정보 제출시	환급/요청/보상/공제된 세액의 2~4배의 벌금과 6개월~2년간 구속

구분	벌금 및 구속
가공 거래에 기초한 세무 서류의 의도적인 발행 또는 이용시, PKP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해당 세액의 2~6배의 벌금과 2년~6년간 구속

(주):

1. 장부 부실기장, 사기 및 횡령의 경우 보다 가혹한 가산세, 가산금 및 구속기간이 부과된다.
2. 형사 제재는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Reduction or Waiver of Tax Sanction (Sunset Policy Part II)

(세무상 제재의 감면 또는 면제 (Sunset Policy Part II))

국세청은 납세자의 단순 실수나 무과실에서 비롯된 행정상제재를 납세자의 신청하에 감면 내지는 면제할 수 있다. 동 행정상제재는 2015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중의 지연신고(자진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인한 사항들에 국한된다. 납세자는 동일한 건에 있어 두 번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1983년 No. 7호 소득세 법령은 2008년 No. 36호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Tax Rates (세율)

과세연도 2010년부터 적용 가능한 법인세 표준세율은 25%다. 연 수입금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인 법인은 연 수입금액 48억 루피아까지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50%가 할인되어 적용된다. 1년 과세 연도에 총수입이 IDR 48억을 넘지 않으며 특정 심사조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는 총수입의 1% 최종분리과세 된다.

법인세 표준세율은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PE)을 통해 비거주자가 받거나 벌어들인 소득에도 적용된다. 또한 고정사업장은 20%의 지점세 (Branch Profits Tax)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고정사업장의 세후 순이익에 적용된다. 만일 고정사업장이 최종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받거나 벌었다면, 지점세의 과세표준은 최종분리과세 되는 소득세를 차감한 과세소득이어야 한다. 20%라는 이 일반세율은 적용 가능한 조세 조약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의 세후 순이익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될 경우, 지점세의 면제가 적용된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창립자나 창립 구성원으로서의 자본출자
-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어 주소를 둔 기존 회사에 대한 자본출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무형재화에 대한 투자

다른 것 중, 무형재화나 자산의 구입 혹은 재투자과 관련하여 특정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인도네시아에서의 재투자 스케줄
- 고정사업장의 재투자/고정자산/무형재화에 대한 보유기간
-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요건

Final Income Tax (최종분리과세)

특정 소득은 총수입의 일정비율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Final tax 부분 참조).

Corporate Tax Incentives (법인세 인센티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총 발행주식의 최저 40%를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에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Tax Objects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넓은 의미로 소득(Income),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내외부에서 납세자가 받거나 획득한 경제적 능력의 증가로 정의되며, 어떤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납세자의 부의 증대를 위하여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소득세법에서 추가되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광업회사의 광산채굴권(Mining Concession) 또는 자본출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혹은 양도로 인한 이익
- 샤리아 (Sharia) 사업에서 얻은 소득
- 비용으로 기록되었던 납부세액의 환급 및 추가 환급세액
- 환급세액의 보상으로 수취한 이자수익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잉여금

Calculation of Income – Deductible Expenses (소득 계산– 손금산입 비용)

새로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상 소득을 획득, 수금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합법적인 모든 사업상 비용은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손금산입 비용은 다음과 같다(단, 다음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음).

-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드는 비용
 - 원자재 비용
 - 임금, 급여
 - 이자, 배당금, 로열티
 - 여행 경비
 - 보험료
- 감가상각 및 상각 비용
- 판촉 및 판매 경비로서 지정양식에 기록되고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 비용의 경우
 - 전자 매체, 인쇄 매체, 기타 매체 내 광고비
 - 상품 전시 비용
 - 신상품 소개 비용
 - 상품 판촉과 관련된 후원 비용
- 회사가 소유하고 사용한 또는 소득을 획득, 수금 및 유지하기 위하여 소유한 자산의 양도나 이전에 따른 손실

-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채권의 대손상각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손상각이 이미 채권자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기록될 것
 - 미회수채권 명세서가 DGT에 제출되었을 것
 - 채권회수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정부에 제기되었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면제를 무효화 하는 서면약정이 존재하거나 이러한 사실이 일반 또는 특별 발행물에 발표되었거나 채무자가 그의 채무가 일정금액까지 무효화된 것을 인지하였을 것
- 기부금 및 국가재해, 연구개발, 교육시설, 스포츠 발전, 사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기금/기부가 적절한 권한을 지닌 기관을 통해 직접 이뤄지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이러한 기부금을 비용으로 신고한 납세자의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는 이익 포지션에 있어야 함.
 - 해당 기부금은 충분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 기부금 수령기관은 납세자로 등록되어야 함. 단, 법에 의해 면제되거나 기부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는 예외
 - 한 회계연도의 총기부금이나 관련 비용은 전년도 이익의 5%를 넘지 말아야 함.

또한, 기부의 종류와 형태 및 현금방식이 아닌 기부의 평가방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요건이 있다.

- 십일조 현금(Zakat)이나 종교적 기부로서 유효한 증빙서류가 구비되고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의 획득, 수급 및 유지 활동과 관련된 거래로부터 발생하여 지불한 부가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분. 만일 해당 부가세 매입세액이 1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은 자본화되어 상각/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되어야 한다.

Calculation of Income – Non-Deductible Expenses (소득계산-손금불산입 비용)

손금불산입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손금불산입 비용은 법이나 관련 규정과 판결에 명시되어 있다. 손금불산입 비용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 단,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비와 작업복, 특정의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현물지급 비용 등은 제외
-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의 50%
- 이익 배당액
- 선물 및 기부. 단, 종교적 현금(Zakat 등)이나 국가재해, 연구개발, 교육시설, 스포츠 발전,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부는 예외
- 각종 충당금/준비금. 단, 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준비금(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관련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회보장운영기관의 사회복지기금 충당금, 예금보험기관의 인수충당금, 광업회사의 복구충당금, 산림회사의 산림준비금, 폐기물처리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유지 및 폐쇄 준비금은 예외

- 소득세 납부액
- 추정세액 및 과징금 납부액
- 최종 분리과세되는 소득, 인정과세표준율(Deemed Profit Margin)로 과세되는 소득 및 면세 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
- 출자금 주식으로 분할되지 않은 파트너십과 협회의 출자자에 대한 급여와 보수
- 2016년부터 손금불산입 항목에 속하는 이자비용, 특정 산업을 제외하면 허용되는 부채비율은 4:1

확정신고대상 혹은 비과세대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화환산이익은 익금항목이며, 외화환산손실은 손금항목이다.

Debt-to-Equity Ratio (부채비율)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은 2015년 9월 9일에 과소자본세제를 재도입하였다. “과소자본세제”는 자본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제도이다. “법인소득세 계산을 위한 부채비율의 측정”으로 명명된 동 규정은 재무부장관령 PMK169에 규정되어 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PMK169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부채와 자본의 정의, 부채비율의 임계치, 기타 의무준수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동 규정은 부채비율이 4:1을 초과하는 부채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특정 차입원가는 예외) 따라서 임계치인 4: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동 규정은 역내 및 역외차입금 혹은 특수관계자 및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MK169는 부채 및 자본뿐만 아니라, 차입원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은 자본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PMK169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준수 이외에도, 역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납세자는 차입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Depreciation/Amortization (감가상각/ 상각)

-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이 허용된다. 단, 건물은 정액법만 허용됨.
- 선택된 감가상각 방법은 일관되게 해당 자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 정률법을 선택한 경우, 잔존가치는 마지막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연도에 일괄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은 지출이 발생한 연도나 자산의 건설/설치가 완료된 연도에 시작된다. 하지만 DGT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산이 처음 이용되거나, 생산이 개시되거나, 사업 소득을 처음 얻은 연도에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유형자산의 그룹	내용연수	상각률	
		정액법	정률법
I. 비건축물			
Category 1	4년	25%	50%
Category 2	8년	12.5%	25%
Category 3	16년	6.25%	12.5%
Category 4	20년	5%	10%
II. 건축물			
영구	20년	5%	
비영구	10년	10%	

- 비건축물 유형자산 그룹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자산 내역은 재무부 (MoF)가 규정한다.
-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은 상기 표의 비건축물 그룹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각한다.

Loss Carried Forward (이월결손금)

- 결손금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Non-Taxable Income (비과세 소득)

(법인 및 개인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비과세 소득의 범주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당사자 간에 사업, 업무나 소유권 관계와 무관하게 받은 원조,

- 기부, 십일조 헌금, 종교적 기부나 선물
- 상속재산
- 법인 거주자가 다른 법인 거주자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이는 이익유보금을 재원으로 하여 분배되고 수취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건강, 사고, 생명이나 교육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개인에게 지불하는 보험금
- 지분이나 자본출자의 교환 대가로 받은 현금을 포함한 현물자산
- 인도네시아에서 특정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이 벤처 캐피털 회사에 분배한 이익 배당액
- 집합투자약정에 참여한 집합투자자(즉, 펀드투자자)를 포함해 지분증권, 파트너십, 협회나 회사 없이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사원이 받은 이익 배당액

Sale of Land and/or Building (토지나 건물의 양도)

- 2016년 9월부터 2.5%의 최종분리 과세(Final Tax)가 법인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납세자가 단순 주택과 단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의 최종분리 과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5%의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세의 'Land and/or Building Acquisition Duty' 참조). 토지나 건물을 공익목적으로 정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정부보조금, 상속,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적격합병, 비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연간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납세자가 양도한 6천만루피아 미만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Income from Derivative Transactions (파생상품 거래에서 얻은 소득)

증권거래소와 선물시장 내 파생상품 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최종 분리 과세가 더 이상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소득으로 인식한다

Corporate Tax Facilities (법인세 우대-투자 인센티브)

소득세법 31A에 따르면 특정 사업 분야나 개발이 덜 된 특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우대조치가 부여될 수 있다.

- 유형고정자산(토지 포함)의 투자금액의 최대 30% 상당액을 6년 동안 연 5%씩 순이익에서 추가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상각 및 상각
-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10%로 경감(조세조약상 더 낮은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법인세 우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높은 투자가치 보유 혹은 수출주도형 구조, 높은 노동집약도 및 높은 국산 함유량 등 질적인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법인세 우대 적용이 적합한 업종은 식품, 섬유, 화학, 산림 및 벌목, 석탄 및 갈탄 광업, 석유, 천연가스, 지열 광업 등이다.

Tax Holiday Facility (세금 면제 및 감면)

선도산업(Pioneer Industry)에 신규투자를 하였지만 소득세법 제31A조에 따른 어떠한 세금 우대 (상기 내용)를 부여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2007년 투자법 No.25의 제18(5)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언급된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산업 연계성이 있고, 부가가치와 높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소개함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산업이어야 한다.

세금 면제 및 감면(Tax Holiday)은 다음과 같은 특정산업에 적용된다.

- 업스트림 금속, 원유정제 또는 민간협력의 형태로 진행되는 인프라사업, 산업장비, 농업, 임업 및 어업기반 산업, 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해운업, 경제특구 및/또는 경제구조(민간의 협력계획)에 주요 가공 공업 등

제공되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투자규모가 IDR 1조이상인 경우 법인세 부채의 10%-100% 감면
- 투자가치가 IDR 5,000억이상 ~ 1조 미만인, 정보 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50%까지 법인세 감면
- 세금 면제 및 감면 기간은 상업운전 시작부터 최저 5년-최대 15년이다. 사업의 경쟁력 및 전략적 가치에 따라 재무부의 재량을 요해서 20년까지 CIT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세금 면제 및 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규납세 대상 법인일 것
- 주요 자격증 또는 사업 허가증을 보유한 선도산업 영위 법인일 것
- 특정 선도산업에 최저 IDR 1조를 투자하거나 정보통신산업에 최저한 IDR 5,000억을 투자할 것
- 회사가 투자계획대로 실제로 이행하기 전까지 인출이 제한되어 있는 투자총액의 최소 10%이상 규모의 예금을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 후 승인받을 것
- 재무부에서 정한 부채자본비율을 만족시킬 것
- 2011년8월15일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법적실체로서의 지위를 득하였을 것

세금 면제 및 감면은 관련 규정에 따른 소득에만 적용된다. 자본이득,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임대수익, 채무면제이익, 재평가이익,

기타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되며, 면제 및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납세자는 각 유형별로 장부기장을 따로 하여야 한다.

납세자에게는 오직 한가지 세금 혜택만 부여된다.

Corporate Tax for Certain Industries / Tax Payers (특정산업/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 석유와 가스, 지열 및 샤리아 기반의 산업을 위한 세금 조항은 정부 규정 및 재무부령을 통해 개별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COW 계약에 다는 일반광산 및 석탄광산에 대한 세금은 관련 계약에 따름.
- 특정사업의 특정 납세자에게는 총수익에 기준한 최종분리 과세 (see page 36)
- 소규모 사업자(개인 및 기업)는 총 수익기준 1% 과세대상임 (see page 37).

Corporate Tax for Sharia Business (샤리아 사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에 구체화된 소득과 비용에 관한 처리내용은 전통적인 은행/금융 서비스(Mutatis Mutandis)와 동일한 방식으로 샤리아 기반의 사업 활동에도 적용된다. 샤리아 은행과 샤리아 금융 서비스의 소득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샤리아 은행

소득 수령인	소득 유형	세금 처리
은행	이용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받는 보너스, 이익 분배, 마진	이자로 처리
	그 외의 기타 소득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투자자/예금고객	위탁펀드로부터 받는 보너스, 이익 배분 및 기타 소득, 해외 샤리아 은행의 지점이나 인도네시아 샤리아 은행을 통해 이뤄진 해외 투자	이자로 처리
	그 외의 기타 소득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2. 샤리아 금융 서비스

거래 유형	세금 처리
리스(Ijarah)	일반적인 운용리스와 같이 처리,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금융 리스(Ijarah Muntahiyah Bittamilk/IMB)	선택권이 있는 금융리스와 같이 처리, 리스자산은 과세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팩터링(Wakalah bil Ujrah)	이득이나 이익은 이자로 처리
개인 금융(Murabahah, Salam, Istishna)	이득이나 이익 마진은 이자로 처리
그 밖의 샤리아 금융	수수료나 기타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기업 금융(Mudharabah, Mudharabah, Musytarakah, Musyarakah)	이득이나 이익 분배는 이자로 처리
자산의 전달(공급자에서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를 고려)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Deemed Profit Margins (인정과세표준)

아래의 특정사업은 매출액의 일정율을 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인정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업종	인정과세표준을 (매출액 기준)	유효 소득세율*
국제 석유 및 가스 시추 용역회사	15%	3.75%
국제 해운 및 항공회사	6%	2.64%
국내 해운회사	4%	1.20%
국내 항공회사	6%	1.80%
특정 상공부 산하 주재사무소	수출가액의 1%	0.44%

* 유효 소득세율은 소득세법이나 규정상 세율 변경이나 조세조약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s (해외 자회사 규칙)

- 재무부령을 통해 소득세법은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법인을 제외한 해외법인에 자본출자한 거주자의 배당금 수령 시점을 결정한다.
 - 거주자가 최소 50%의 발행주식에 자본출자한 경우
 - 다른 거주자와 함께 최소 50%의 발행주식에 자본출자한 경우
- 재무부령을 통해 소득세법은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법인을 제외한 해외법인에 자본출자한 거주자의 배당금 수령 시점을 결정한다.
 - 해당 회계연도의 해외법인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4번째 달
 - 해당 해외법인에 연간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거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말 이후 7번째 달
- 배당금액은 증권거래소에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법인을 제외한 해외법인에 자본출자한 지분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세후이익에서 분배되는 배당금 총액이어야 한다.

Indirect Purchase of Indonesian Shares or Assets Involving Special Purpose Companies (특수목적기업을 통한 인도네시아 지분 또는 자산의 간접 매입)

다른 인도네시아 당사자(B)가 특수목적기업(SPC)을 통해 한 인도네시아 납세자(A)의 지분 또는 자산을 간접적으로 매입한 경우, 만일 그 SPG가 나머지 다른 인도네시아 당사자(C)와 특수관계에 있고 불합리한 가격책정이 있었다면, 나머지 다른 인도네시아 당사자(C)에 의한 지분 또는 자산의 매입으로 규정될 수 있다.

Indirect Sale of Indonesian Shares Involving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기업을 통한 인도네시아 지분 또는 자산의 간접 매각)

- 비거주자가 조세피난처(Tax Haven) 국가에 있는 인도네시아 주식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 (또는 도관 회사, SPC)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만일 그 SPC와 인도네시아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라면, 그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조세피난처 국가란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보다 50%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이거나 인도네시아와의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정의한다.

Tax-Neutral Mergers (세금-중립적 합병)

- 일반적으로 기업의 합병, 통합이나 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이전에 따른 이득은 과세되고, 반면 손실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 사업계획테스트(Business Purpose Test)가 통과된 경우, DGT로부터 승인을 얻어 세금 중립적 합병이나 통합을 위해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 세금 혜택은 기업공개(IPO)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



제4장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1983년 No. 7호 소득세 법령은 2008년 No. 36호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Tax Rates (세율)

일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소득		세율
Rp 50,000,000	이하	5%
Rp 50,000,000	초과 ~ Rp 250,000,000 이하	15%
Rp 25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25%
Rp 500,000,000	초과	30%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소득		세율*
Rp 50,000,000	이하	0%
Rp 50,000,000	초과 ~ Rp 100,000,000 이하	5%
Rp 10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15%
Rp 500,000,000	초과	25%

연금기금이나 노후저축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소득	세율*
Rp 50,000,000 이하	0%
Rp 50,000,000 초과	5%

- * 이는 최종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로서 일시불이나 2년 내 지급 시에만 적용 가능함. 3년 차 및 그 이후 지급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비거주자 개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를 적용 받는다(PPh 26 원천징수세). 하지만 이 세율은 여러 상황과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Tax Registration and Tax Filing (세무 등록과 신고)

- 모든 개인거주자(해외파견직원 포함)는 반드시 세무서에 납세자등록을 하고 납세자번호(NPWP)를 받아야 한다. 비과세소득 임계치 이하의 소득을 가진자, 세법상 비거주자, 남편과 함께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기혼여성 등은 세무등록이 면제된다.
- 개인 납세자들은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Form SPT 1770이나 1770S나 1770SS). 적용 가능한 경우, 매월 납부와 신고가 필요하다.
- 개인납세자는 각자의 개인소득세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접속을 위해 세무서로부터 e filing number (e FIN)을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Tax Payments (세금 납부)

DGT는 2016년1월1일부터 세금납부시 온라인상으로 e billing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강제하였다. 동 신규 규정은 기존의 실물문서를 이용한 세금납부를 대체한다. 납세자들은 이제 유효한 세금납부처리를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e billing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Billing코드는 7일간만 유효하며, 거래은행이 세금납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Personal Deductions (인적공제)

2016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인적공제는 개인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적용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공제의 근거	공제 금액(연단위)*
본인	Rp 54,000,000
배우자	Rp 4,500,000 (부부합산 소득이 있는 아내의 경우 Rp 54,000,000 추가공제)
부양가족	Rp 4,500,000 (최대 3명까지 각각 공제)
직업 지원	최대 Rp 6,000,000까지 총소득의 5%
연금납부(연금 수령자에게 적용)	최대 Rp 2,400,000까지 총소득의 5%

공제의 근거	공제 금액(연단위)*
승인받은 연금펀드 분담금(e.g BPJS Ketenagakerjaan)	본인 분담금 총액
의무적인 십일조 세금 (zakat) 또는 종교적 헌신	확실한 입증자료 가능하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만 제공된 실제 분량

재무부에는 위의 인적공제금액을 재결정할 권한이 있다. 상기 개인적인 공제액은 2016 년 6 월에 도입되었으며 2016 년 1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인 및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게 적용가능한 BPJS 맨 파워 (BPJS Ketenagakerjaan) 및 건강보험(BPJS Kesehatan)과 같은 종합적 사회보장 제도를 소개했다. 해외파견주재원의 경우 취업허가 갱신시 동 사회보장제도 가입여부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각각의 계획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계획	보험 되는 분야	급여의 비율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BPJS Ketenagakerjaan (BPJS 맨 파워)	일 상해 보험	0.24 - 1.74%	-
	사망보험	0.3%	-
	노후 보장 연금	3.7%	2%
	연금 계획 ^{(1),(2)}	2%	1%

사회보장 계획	보험 되는 분야	급여의 비율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BPJS Kesehatan (건강보험) ⁽²⁾		4%	1%
			추가 가족구성원 1%

(주):

- 연금보험기금 계산을 위한 기본급 한도금액이 2016년3월부로 월 Rp. 7,000,000에서 Rp. 7,335,300으로 증가하였다. 금액은 향후 바뀔 수 있으며, 해외파견주재원은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다.
- 건강보험기금 계산을 위한 기본급 한도금액이 2016년4월부로 월 Rp. 4,725,000에서 Rp. 8,000,000으로 증가하였다. 금액은 향후 바뀔 수 있다.
- 의무보험료 납부액으로 남편, 아내 및 피부양자 3명까지 보장되며 추가 가족구성원은 추가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5장 원천징수세와 최종분리과세 (Withholding Tax and Final Tax)

System (체계)

- DGT의 세금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납세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는 수령인에게는 최종 분리과세되는 소득세 (Final Tax)가 되거나 추후 연차 신고 시 공제/환급이 가능한 선납소득세(Prepaid Tax)가 될 수 있다.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는 최종 분리과세가 된다.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 21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세율은 '개인 소득세' 참조).
- 재무부(MoF)와 노동자 사회보장기관(PT. BPJS)에서 승인한 연금기금의 경우, 연금과 노인저축펀드를 지급 시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개인 거주자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20% 높게 부과된다.
- MoF 규정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에 있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고용주의 개인 거주자로서 받는 소득금액을 재결정할 수 있다.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 22 (PPH 22 - 수입과 특정물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 수입물품에 2.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수입허가증이 없는 수입업자의 경우는 7.5%).
- 정부 국고 및 국영기업은 물품 구매대금 지급 시 1.5%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한다.
- PPh 22 원천징수세는 특정 상품의 현지 구매와 차량 판매 시에도

부과된다.

-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100% 높게 부과된다.

The major types of payment made to Indonesian tax residents and their applicable rates are:

WHT 세율(총액기준)*(1)(2)	지급유형*
수입 가격의 7.5% 또는 10%	수입허가증(Angka Pengenal Impor/API)이 있는 경우의 특정 물품 수입
수입 가격의 0.5%	수입허가증(API)이 있는 경우의 콩, 밀, 밀가루 수입
수입 가격의 2.5%	수입허가증(API)이 있는 경우의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수입
수입 가격의 7.5%	수입허가증(API)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입
경매 가의 7.5%	수입품 경매
거래 가격의 1.5%	정부금고 및 국영기업의 물품 구매
수출 가격의 1.5%	석탄, 금속 광물 및 비금속 광물의 수출
거래 가격의 0.3%	유통업자의 철강제품 구매
거래 가격의 0.45%	유통업자의 자동차 구매
거래 가격의 0.1%	유통업자의 종이제품 구매
거래 가격의 0.25%	유통업자의 시멘트 구매
거래 가격의 0.3%	유통업자의 약품 구매
거래 가격의 5%	사치품 구매*(3)
거래 가격의 0.45%	판매대리점과 수입업자로부터 차량 구매
구매 가격의 0.25%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삼림, 농장, 농업, 농원의 도매로 구매

WHT 세율(총액기준)*(1)(2)	지급유형*
거래 가격의 0.3%	유류 판매
거래 가격의 0.25%	국영주유소(Pertamina)에 등유 판매
거래 가격의 0.3%	국영주유소가 아닌 곳에 등유 판매
거래 가격의 0.3%	윤활유 판매
거래 가격의 1.5%	광업면허를 소지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석탄, 금속 및 비금속광물
거래 가격의 0.45%	제조업자와의 금과 거래 (인도네시아 은행에 대한 판매는 제외)

(주):

1.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100% 높게 부과된다.
2. MoF는 PPh 22의 원천징수 의무자에 다음과 같은 주체를 추가했다. 승인된 예산이용자(Kuasa Pengguna Anggaran/KPA)에 의해 지불명령 지시서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공직자, 통화공급(Uang Persediaan/UP) 방법을 이용해 지불하는 정부 국고
3. 사치품이란 개인용 항공기, 크루즈, 토지와 함께 주택(IDR 50억 이상인 거래가격 또는 400m² 이상인 건물 면적), 아파트, 맨션(IDR 50억 이상인 거래가격 또는 150m² 이상인 건물 면적), 사륜 차량(IDR 20억 이상인 거래가격 또는 3,000cc 이상인 용량), 이륜 및 삼륜 차량(IDR 3억 이상인 거래가격 또는 250cc 이상인 용량)을 말하며, MoF 규정을 통해 제시된 특정 거래가격이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 PPh 22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 재난 구제를 위한 기증품 수입
- 자연 보존을 위한 물품 수입
- 생산물분배계약자(PSC)의 석유 및 가스 상류사업(Upstream Oil and Gas)에 사용할 물품 수입
- 학교운영지원(BOS) 기금에 사용할 물품 구매
- 국영기업의 최대 1억 루피아까지 지급
- 과학 및 기술 도서 수입
- 원천징수자로서 국영기업의 지출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s 23/26 (PPh 23-거주자 간 거래이익에 대한 소득세, PPh 26-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다른 주요 원천징수는 PPh 23이나 PPh 26에 규정되어 있다. 지급유형별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WHT 세율*(1)(2) (총액기준)	지급 유형
PPh 23 - 거주자 간 거래이익에 대한 소득세	
15%	배당금 ^{*(3)} , 이자 ^{*(4)} , 스와프 프리미엄, 지급보증료, 로열티
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 임차료 및 사용에 대한 기타 소득 ^{*(5)}
2%	다음의 기술, 관리, 구축, 컨설팅 및 특정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수 • 평가 서비스 • 보험계리 서비스 • 회계/감사/증명 서비스 • 법률 서비스 • 건축업 • 도시 계획 및 landscape architecture 서비스 • 디자인 서비스 • 석유/가스 산업의 시추 서비스(고정사업장 수행분 제외) • 석유/가스 채굴관련 보조 서비스 • 일반 광물 부문의 광물 및 지원 서비스 • 항공사 및 공항 지원 서비스 • 산림벌채 서비스 • 폐기물처리 서비스 • 인력공급 서비스 • 중개인/대행사 서비스 • 증권거래 서비스(증권거래소, KSEI, KPEI 제외) • 보관 서비스 • 더빙 서비스

WHT 세율*(1)(2) (총액기준)	지급 유형
2%	• 필름 믹싱 서비스 • 영화 홍보, 광고, 사진, 슬라이드, 배너, 팸플릿, 빌보드 및 폴더 등 홍보 서비스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수리 및 유지 포함) • 웹사이트 제작업 및/또는 매니지먼트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연결 • 데이터, 정보 및/또는 프로그램의 저장, 처리, 및/또는 분배 • 설치용역서비스(건설업 인가받은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유지보수 서비스(건설업 인가받은 건설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차량 및/또는 토해양 교통의 정비 서비스 • 위탁 생산 (Maklon) 서비스 • 보안검사 서비스 • 이벤트조직 서비스 • 포장 서비스 • 정보전달을 위해 매스 미디어, 야외 미디어 또는 기타 미디어에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WHT 세율*(1)(2) (총액기준)	지급 유형
2%	• 해충 구제 서비스 • 청소 서비스 • 정화조 서비스 • 수영장 유지 서비스 • 케터링 서비스 • 운송서비스 • 물류 서비스 • 문서 처리 서비스 • 신고 부리기 서비스 • 교육기관이 하는 학술연구를 제외하며 연구 서비스 및/또는 실험 서비스 • 주차관리 서비스 • 토양 검정 서비스 • 토양 준비 및 관리 서비스 • 파식(播植) 서비스 • 초목 관리 • 수확 서비스 • 농장물, 수산물, 축산물 및/또는 임산물 • 장식 서비스 • 인쇄/ 출판 서비스 • 번역 서비스 • 규정 Article 15에 든 서비스 제외하며 운송/ expedition 서비스 • 향만 서비스

WHT 세율*(1)(2) (총액기준)	지급 유형
2%	• 초목 관리 • 수확 서비스 • 농장물, 수산물, 축산물 및/또는 임산물 • 장식 서비스 • 인쇄/ 출판 서비스 • 번역 서비스 • 규정 Article 15에 든 서비스 제외하며 운송/ expedition 서비스 • 항만 서비스 •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서비스 • 보육 서비스 • 훈련 및/또는 코스 서비스 • 현금인출기의 현금 배달 및 전달 서비스 • 인증 서비스 • 조사 서비스 • 시험관 서비스 • 국가예산 및/또는 지방 자치 예산에 비용을 지우는 상기 서비스 예외하는 서비스

PPh 26 -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20%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 (물품 구매의 경우는 제외) ^{*(7),(8)}
5%	비거주자(PE 제외)에게 인도네시아 내에서 다음 자산을 양도 및 이전하는 경우 거래가격에 대해 5%의 최종 분리과세 ^{*(6),(7)} • 사치품 보석, 가공 다이아몬드, 금, 다이아몬드, 사치품 시계, 골동품, 그림차, 오토바이, 요트, 경비행기 등
5%	비거주자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래가격에 대해 5%의 최종 분리과세 ^{*(7)}

(주):

1.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 납세자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100%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3.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금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개인에 대한 배당금은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래 참조)
4. 특정 수입이자는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래 참조)
5. 금융리스관련 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6. 거래건당 1,000만 루피아 이하의 매매거래의 경우 비과세된다.
7. 적용가능한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감면 혹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8. 수입된 영화상품 구입시 특정요건을 만족하면 제26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예시된 거래들의 경우 원천징수 혹은 자가징수를 통해 최종분리과세된다.

소득의 유형	적용 원천징수세율	
	거주자 & 고정사업장	비거주자 ⁽¹⁾
개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10%	20%
복권당첨금	25%	20%
채권이 이자 및 할인액 (무이자부채권을 포함)	15% ⁽²⁾	20%
뮤추얼펀드를 통해 수령한 이자 및 할인액 (2014 ~ 2020년 해당분/2021년 이후 해당분)	5% 10%	N/A N/A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서 24만 루피아 이상인 경우	10%	20%
항공 / 해운 서비스: • 국제 항공 / 해운 서비스 • 국내 항공 서비스 • 국내 해운 서비스	- 1.8% ⁽³⁾ 1.2% ⁽³⁾	2.64% ⁽³⁾ - -

소득의 유형	적용 원천징수세율	
	거주자 & 고정사업장	비거주자 ⁽¹⁾
역외소재 회사에 지급되는 보험료	N/A	1%, 2% or 10% ⁽⁴⁾
건설 계획 및 감독 서비스료	4%/6% ^{*(5)}	20%
건설 계약 서비스료	2%/3%/4% ^{*(6)}	20%
상장주식의 매각(총 수익금의)	0.1%	0.1%
IPO 가격으로 발기인의 주식 매각시 추가 세금 ^{*(7)}	0.5%	0.5%
개인의 토지/건물의 양도	2.5% / 1% / 0% ⁽⁸⁾	N/A ⁽⁸⁾
토지와 건물의 임대	10%	20%
중앙은행 증서(SBI), 저축 & 정기 예금에 대한 은행이자나 할인료 ^{*(9)}	20% ⁽¹⁰⁾	20%
승인된 자산재평가 이익	10% or 20% ⁽¹¹⁾	N/A
샤리아 사업소득	20% ⁽¹²⁾	20% ⁽¹²⁾
1년 회계 연도 안에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얻는 IDR 48억을 초과하지 않은 모든 소득	1%	-

(주):

-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세율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이자 총액 또는 취득가액에 대한 액면가액 초과분에 적용한다.
- 인정과세표준율(Deemed Profit Margin) 적용 후 유효세율임. 국제 항공 및 해운회사의 경우, 원천징수는 고정사업장(PE)을 통해 이뤄진다.
- 만일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보험 혹은 재보험회사인 경우 세율은 각각 2%나 1%를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율은 10%를 적용한다.
- 유효세율: 세율에는 고정사업장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지점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인 계약업체의 경우 4%
 - 비공인 계약업체의 경우 6%
- 유효세율: 세율에는 고정사업장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지점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규모 공인 계약업체의 경우 2%
- 양도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8. 세율:

- 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 2.5%: 위 이외의 경우
- 0.0%: 정부기관, 공공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 연간 소득이 비과세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가 6,000만 루피아 이하의 가치를 지닌 토지나 건물의 증여, 상속 및 양도 등을 하는 경우 면제 적용

9. 750만 루피아 이상인 금액(총 정기예금, 저축 계좌, 중앙은행 증서)의 경우, 은행과 특별승인된 연금 및 특정기간의 뮤추얼 펀드에 대해 예외가 적용된다. 특정한 총액 및 기간에 은행에 예금하는 것에 받는 선물은 예금이자로 간주된다.

10. 수출대금을 원천으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달러화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미국 달러화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 잔여만기가 1개월 이내인 경우: 10%
- 잔여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7.5%
- 잔여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2.5%
- 잔여만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0%

인도네시아 루피아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 잔여만기가 1개월 이내인 경우: 7.5%
- 잔여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5%
- 잔여만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0%

11. 재평가된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추가적으로 15%의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가 부과된다.

- 팔리거나
- 재평가된 자산의 새로운 내용연수가 만료되기 전에 양도되거나
- 8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토지/건물 및 고정자산을 10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세금중립적 합병, 결합, 확장 등의 과정에서 양도된 자산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12. 보너스, 이윤 분배 형태의 소득과 위탁펀드에서 얻은 기타 소득, 인도네시아 샤리아 은행이나 해외 샤리아 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을 통한 해외 투자, 팩토링(Wakalah bil Ujrah), 기업금융(Mudharabah, Mudharabah Musytarakah, Musyarakah), 개인금융(Murabahah, Salam, Istishna)에서 비롯된 이득이나 이익은 이자로 취급된다. 다시 말해, 일반 은행/금융 서비스에서의 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제6장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2008년 No. 42호 법령으로 개정된 1983년 No. 8호 법령

Threshold for VAT Registration (VAT 등록 대상)

부가가치세(VAT) 납세자 등록(PKP)은 과세 재화나 서비스의 매출에 근거하여 등록한다. 과세 재화나 서비스의 연간 매출이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기준금액은 48억 루피아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에 거주하는 사업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Taxable Events (과세대상 사건)

VAT는 과세대상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과세대상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과 수출
- 과세대상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 공급
- 과세지역 외에서 과세지역으로 유입된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 소비
- 본점과 지점 간, 동일한 법적 실체인 지점 간의 과세대상 재화의 이동
- 위탁 재화의 이동
- 회사의 청산 시 잔존하는 자산/재고자산
- 제3자나 정부 경매인을 통한 재화의 공급
- 금융리스 계약을 통한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 사용
- 샤리아 금융 구조하의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동 전달은 VAT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가 필요한 당사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무상 공급되는 과세대상 재화
- 무형의 과세 재화와 과세 서비스의 수출

VAT Invoice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판매자에게는) VAT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구매자에게는) VAT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수단이다.

세금계산서의 형식과 내용은 DGT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불완전한 준비는 부실기재로 간주되어 판매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발행되어야 한다.

- 과세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시점
- 과세대상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기 전에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시점
- 업무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공급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지급
시점
- MoF 규정에서 정한 기타 특수한 경우.

각 VAT 과세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VAT 일련번호(Serial Number)는
세무서가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VAT 과세사업자는 활성화 코드(Activation Code)와 비밀번호>Password)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등록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는
신청서를 3일 내에 처리하며, 코드는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e-VAT Invoice) 도입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행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법인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가 우선 활성화 코드 및 암호 요청을 하면, 나머지는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과 동일하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자인증서를
요청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체 및 발급취소는 모두
국세청이 지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과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일련번호를 받아야 한다.

- a. 과세사업자가 등록된 세무서 및/또는
- b. 국세청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IDR 통화로 작성되며,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기재되어야 하며,
전자서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DGT가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거래하는 소매 사업자 및 소매점,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유사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특정 문서들은 세금계산서로 처리된다. 이런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과세대상 재화, 서비스 및 무형의 재화(인보이스가 첨부된)에 대한 수출신고서
- (지급전표가 첨부된) 수입신고서
- 밀의 공급을 위한 BULOG/DOLOG로부터의 납품주문서(SPPB)
- 국영석유공사인 Pertamina에서 발행한 배달인수증(PNBP)
- 전기통신회사가 발행한 청구서
- 국내 항공운수 서비스를 위해 발행된 티켓, 항공운송장이나 납품청구서
- 향만 서비스를 위해 발행된 서비스 배달인수증
- 전기회사가 발행한 청구서
- 해외의 무형 재화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자가평가 VAT의 지급을 위한 세금지급전표(SSP)
- 과세대상 재화나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음료수회사가 발행한 청구서
- 증권중개회사의 매매확인서
- VAT 과세대상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은행이 발행한 청구서
- 경매 의사록과 함께 과세물 전달의 VAT 지불의 세금납부전표

VAT Rates (VAT 세율)

일반적인 VAT 세율은 10%이다. 하지만 0%의 VAT 세율은 다음 과세대상 사건에 적용된다.

- a. 과세대상 재화의 수출
- b. 무형의 과세대상 재화의 수출
- c. 특정 과세대상 서비스의 수출
 - 위탁 생산
 - 과세지역 밖에서 사용되는 동산과 관련된 수리 및 유지 서비스

과세지역 밖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서비스

세율은 VAT 과세표준인 판매가격/서비스 요금 또는 수입/수출가액이 적용된다

Special VAT Base (특수한 VAT 세율)

관련 VAT세율에 근거하며 VAT가 계산이다. 통상에 과세표준은 거래가치이다. 특정 상황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써야 한다.

- 자가사용 과세대상물 및/또는 과세대상서비스 경우 판매가 또는 총이익 공제후 보상;
- 과세대상물 및/또는 과세대상서비스 무료 공여 경우 판매가 또는 총이익 공제후 보상;
- 영화 전달은 영화 한 편당의 예상 평균의 수익금
- 영화 공급시 영화 한편당의 예정 평균 실수익;

- 담배제품 공급시 소매 가격;
- 회사해산 때 여전히 남아 있고 판매되지 않은 과세 대상물 경우 공정 시장 가격;
- 본사에서 지점으로 (반대 경우도 동일) 및/또는 지점끼리 과세 대상물 공급시 기본 판매 가격 또는 취득 가격
- 중개인을 통한 과세대상물 공급시 중개인과 구매자의 약정가격
- 경매인을 통한 과세 대상물 공급시 경매 가격
- 전달이 지급 또는 중개 수수료에 근거하지 않은 여행사의 여행 상품, booking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booking facilities 등 택배서비스 공급시 청구금액의 10%
- 금 세공품 제조자 또는 거래자에 의한 금 세공품 공급(금 세공품 modification, 수리 서비스 및 관련된 서비스 전달 포함)의 경우 판매가 또는 보상비의 20%. 금 세공품을 금 세공품 제조의 모든 원자재 대체재로 24캐럿 금의 지급으로 대체해서 금 세공품 기업가에 의한금 세공품 전달의 경우 금 세공품 판매가와금 세공품에 있는 24캐럿 금의 지급의 판매가의 가격 차이의 20%;
- 송장에 운송료 포함하는 화물 발송업 공급시 청구금액의 10%
-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상품 배달시 거래액의 30%
- 소규모 사업자에 의해 서비스 배달시 거래액의 40%
- 개인이나 법인의 직업에 관하지 않은 민간건설업 경우에 발생원가의 20%

Self-Assessed VAT (자가평가 VAT)

해외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과세대상 서비스나 무형의 재화를 받아서 소비하는 거주자는 자가평가를 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총금액의 10%를 VAT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자가평가 VAT는 과세 대상 서비스나 무형의 재화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VAT 과세시점이

있는 다음 달 15일이다. 이러한 자가평가 VAT는 매입세액의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VAT Collectors (VAT 징수원)

VAT로부터의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기관, PSC 회사, 국영기업 등에 VAT 징수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재무부(Government Treasurer), 정부 현금 및 재정 사무소(State Cash and Treasury Office), 인도네시아 정부와 석유 및 가스 협력계약(PSC)을 한 계약자, 지열에너지 계약자 및 라이선스 보유자(본점, 지점이나 단위 포함) 및 기타 국영기업들

Goods and Services Not Subject to VAT (VAT 비과세 재화와 서비스)

특정 재화와 서비스는 VAT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재화 (Non-Taxable Goods)

- 다음과 같은 원료로부터 직접 채취한 광석물 및 석유생산물.
 - 원유
 - LPG와 같이 공공 소비되는 천연가스를 제외한 천연가스
 - 지열에너지
 - 석면, 슬레이트, 준부석, 석회석, 부석, 보석, 벤토나이트, 백운석, 장석, 암염, 흑연, 화강암/안산암. 석고, 방해석, 고령토, 백류석, 마그네사이트, 운모, 대리석, 질산염, 흑요선, 오키, 모래 및 자갈, 규사, 진주암, 인산염, 활석, 백토, 규조토, 점토, 명반, 트래스, 자로사이트, 제올라이트, 현무암, 조면암.
 - 석탄 (연탄가공 이전)
 - 철광석, 아연광, 금광석, 구리광, 니켈광석, 은광석, 보크사이트 광석
- 다음과 같은 기초생활품
 - 쌀
 - 벼
 - 옥수수
 - 사과
 - 콩
 - 소금 (요오드 천가 또는 무천가)
 - 고기 (즉, 패키여부와 상관 없이도살, 스키닝, 커팅, 쿨링, 동결, 염절임, 라이밍, 피클링, 보존 등 절차를 거친 생고기)
 - 계란 (즉, 비가공 계란)
 - 우유 (즉, 추가 설탕이나 다른 재료가 없는 패키징여부와 상관 없이 쿨링이나 히팅 절차 진행된 동물 우유)
 - 과일 (즉, 초장여부와 상관 없이 세척, 분류, 껍질을 벗기고, 커팅 등급구분)
 - 채소 (즉 채취, 세척, 탈수 및/또는 지온에 저장된 채소)
- кей터링 사업에 의한 식음료를 포함하는 레스토랑에서 대접되는 식음료
- 돈, 골드바와 기업어음

비과세 서비스 (Non-Taxable Services)

- 의료/보건 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
- 우표를 이용한 우편배달 서비스
- 금융 서비스¹⁾
- 보험 서비스
- 종교 관련 서비스
- 교육 서비스²⁾

- 예술 및 공연 서비스
- 방송 서비스(광고가 포함되지 않은 비상업적인 경우)
- 육상, 해상 및 국제항공 대중교통 서비스
- 노동 서비스
- 호텔 서비스³⁾
-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 주차 지원
- 동전을 이용한 공중전화 서비스
- 우편환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
- 케터링 서비스

주):

1. DGT는 VAT가 면세되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이자의 형태로 보상받는 융자 서비스 형태인 금융 서비스
 - 융자 서비스가 아닌, 은행에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VAT가 면세되는 그 밖의 은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팩터링 활동
 - 신용카드 사업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른 샤리아 원칙을 토대로 한 융자나 기타 활동
2. 다음 서비스는 비과세되는 교육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다음 외에 교육 서비스
 - 정규교육 (유치원, 초등, 중, 고등 학교)
 - 비정규교육 (생활기능 교육 서비스, 어린이아이교육, 청년교육, 여성역량 강화교육, 문해 교육, 직무 교육, 능숙 교육, 평생교육)
 - 비공식 교육 (가족 및 주민이 하는 독립된 학문활동)
 - 관련 있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교육 라이선스가 없는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정규교육 또는 비정규교육 서비스; 또는
 - 다른 재화 및/또는 서비스 전달과 분리할 수 없으며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
3. 다음 서비스는 비과세되는 호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지급기 (ATM), 사무실, 은행, 레스토랑, 연예장, 노래방, 약국, 소매점, 병원 및 미팅 외에 방대여 서비스
 - 사업허가증에 따라 관련 지원시설과 함께 아파트, 맨션 기타 같은 종류의 것의 unit 및/또는 공간의 임대료 (상승 포함)
 - 호텔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정리하는 관광여행서비스

Available VAT Incentives (이용 가능한 VAT 인센티브)

특정 수입과 구매는 VAT가 면제되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징수되지 않는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기계류, 공장 장비 등과 같은 전략물자(Strategic Goods)
- 보세 구역 내 회사에서 가공하는 원재료
- 해외 원조로 자금조달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장비 및 기타 공급품의 수입

- 국영 선박이나 항공 회사와 같은 특정산업의 회사에 의한 수입과 구매
- 면제 결정(Exemption Decree)을 받은 수출 제조업체에서 가공하는 원재료의 수입
- 자유무역지역으로 과세 재화의 수입이나 공급

VAT Refund (VAT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나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다.
- VAT 환급신청은 과세연도 말에만 가능하나, 특정 VAT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월 환급되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급신청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Tax Audit)가 수반되며, 이 조사는 문서화 수준(Quality)에 매우 엄격하다.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서와 연말 VAT 신고용 장부를 대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환급결정을 받기 위한 기간은 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주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VAT 환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된다.
 - 생산 실패: 생산 준비단계에 있는 VAT 과세사업자의 경우, 만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생산을 개시하지 못하였다면, 과거 환급되었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에 대한 VAT 환급: 외국인이 지정된 소매업체에서 물품 구매 시 납부한 VAT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출국할 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최소 환급신청 금액은 IDR 50만이다.

Input VAT Not Allowed for Credit (매입세액 불공제)

- 특정 거래들의 경우 VAT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VAT 납세자 등록(PKP)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 사업자가 생산을 개시하여 과세대상 공급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단, 자본재 구입은 제외
- 업무무관 구매관련 매입세액
- 과세부과 방식에 의해 부과된 매입세액
-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판매/대여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닌 세단 및 스테이션 왜건 유형의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 간과되어 공제되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발견된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항목의 구매 관련 매입세액

Luxury Goods Sales Tax (특별소비세)

10%의 일반 VAT 세율에 더하여, '사치품'으로 간주되는 특정 재화는 10~125%의 특별소비세 (LGST) 대상이 된다. 사치품이란 다음의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이다. 즉,

- 기본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
- (고소득) 소비자로 구성된 배타적 집단에 의한 소비일 것
- 유용성보다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소비되는 재화일 것
- 특정 호화 주거용 부동산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

바담 섬, 빈판 섬, 까리문 섬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다(자유무역과 자유항만 지역).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시설이 제공된다.

- 자유무역지역에 주소를 둔 회사는 VAT 납세자 등록(PKP)을 할 필요가 없다.
- 자유무역지역에서 과세 재화의 공급 시 VAT나 LGST의 부과가 면제된다.
- 자유무역지역으로 재화를 수입할 경우 수입 VAT나 LGST의 부과가 면제된다.
- 자유무역지역에서 무형의 과세 재화나 과세 서비스의 공급 시 VAT가 면제된다.
- 과세지역 내 기타 장소로부터 과세 서비스가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될 경우, 재무부(MoF) 규정에 따른 특정 서비스 공급을 제외하고는, VAT 대상이 된다.



제7장 부동산세 (Land and/or Building Tax and Duties)

Land and/or Building Tax (토지 및 건물세)

토지 및 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PBB)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세대상)에 부과된다. 2010년 1월부터 시작된 PBB는 현재 지방세 및 징벌법에 규정되어 있다(종전에는 PBB법에서 규정됨). 종전 PBB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혹은 지방 정부가 PBB 규정을 발표하기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방정부는 시골 및 도시지역 모두의 PBB를 규정하여야 한다. 상기 지방정부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기존 PBB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PBB법에서는 과세대상에 대한 PBB는 부동산과세적용가치(NJKP)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NJKP는 과세대상의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에 대해 사전에 결정된 일정 비율이다. 특정한 NJOP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정 산업에 적용된다.

1. 석유 & 가스 및 지열 업체
2. 광물 채굴 업체
3. 탄광업체
4. 야자유 업체
5. 농장 업체
6. 임업 업체
7. 다음에 따른 기타 업체
 - 다음 용도로 쓰이는 바다 연안의 토지
 - 수산물 포획 업체
 - 수산물 양식 업체
 -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 통신 유선 네트워크
 - 전자 유선 네트워크; 또는
 - 유료도로의 구간
 - 위에 열거된 토지상에 건축된 기술적 형태의 건물 .

지방세와 징벌법에서는, 과세대상에 대한 PBB는 NJOP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율은 최대 0.3%이다. 각 납세자에게 1,000만 루피아의 NJOP까지 면세된다.

PBB는 매년 DGT가 발행하는 통지서(SPPT PBB)에 기재된 공식 평가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Land and/or Building Acquisition Duty (토지 및 건물 취득세)

2010년 1월 1일부터 토지 및 건물 취득세(BPHTB)는 지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취득가치 또는 시장가치의 최대 5%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받거나 획득한 당사자(취득자)에게 부과된다. 취득세 대상의 취득가치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실제거래 가격이나 NJOP(상기 토지 및 건물세 참조) 중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

PBB와 유사하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특정 한도 또는 분기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6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가장 최근의 정부규정에 따르면,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한도는 5%
2. 취득세 면제 한도는 8천만루피아 이하
3. 상속(Inheritance)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3억5천만루피아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법인소득세의 'Sale of Land and/or Building'참조)와 토지 및 건물 취득세는 모두 동일한 거래와 관련 있기 때문에, 동 2가지 세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공증인은 토지 및 건물의 권리양도증서에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증인은 또한 토지 및 건물의 권리를 이전하는 당사자가 최종 분리과세 납부 전표에 세무서로부터 세무서가 검토했다는 증거 역할을 하는 인지 (Stamp)를 획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Overview (개관)

2010년 이후로 DGT는 이전가격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해왔다. 4개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TP) 관련 규정과 2개의 분쟁조정 메커니즘 관련 규정을 신설해왔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이전가격 이슈에 주안점을 엄격히 두고 있는 것, 그리고 점점 발전하는 특성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법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의무와 관련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General (개요)

- 2009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008년 No. 36으로 수정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1983년 No. 7(이하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계회가 간 거래가 fair and common business practices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해당 소득이나 비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2과세연도부터 납세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는 2009년도에 관계사간 특수거래를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첨부 양식(별첨 3A/3B, 3A-1/3B-1, 3A-2/3B-2)으로 신고하도록 업데이트 되었다. 해당 양식은 거래의 유형, 관계의 본질, 정상가격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 사항, tax haven countries의 관계사와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첨부 3A/3A-1/3A-2는 납세자의 가장 통화가 인도네시아 루피아인 경우이며 첨부 3B/3B-1/3B-2는 납세자의 가장 통화가 미국 달러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및 기타방법 등(이익분할법 및 거래순이익률법-Profit Split Method an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다. 이러한 산출방법은 OECD 가이드 라인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 TP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9월과 2011

년11월에 DGT는 각각 규정 No. PER-43/PJ/2010 ("PER-43") 및 PER- 32/ PJ/2011, 2개의 주요 법규를 발표했다. 규정 PER-43는 초기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11월에 규정 PER-32 수정되었다. 규정 PER-32로 수정된 PER-43는 납세자를 위한 정상가격 기준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규정 PER-32로 수정된 PER-43은 이전가격 문서 준비 및 정상가격 거래의 본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 규정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은 다음과 같다.
 - a. 거래가 정상가격기준에 따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자 간 거래에 관한 이전가격분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을 하고 비교가능 거래(comparable transactions)를 설정하고 적절한 이전가격방법을 확인하고 비교가능성분석의 결과와 가장 적절한 이전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b. 납세자는 일반적 세무규정 조항에 의거 상기 절차에 대해 문서화해야한다.
 - c. 납세자는 각 관계사 간 거래의 총 금액이 IDR 100억을 넘는 경우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threshold는 각 관계사별 기준에 의한다. 예를 들어 동일 관계사와 2대의 거래가 있고 각각의 거래 금액이 100억 이하이나 총 거래 금액이 100억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 d. DGT의 권한 및 납세자의 권리관련 전반적 내용을 제공한다.
 - e.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이전가격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정사업분야에 적용되는 최종 분리과세 혹은 일반 소득세의 유효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납세자에게 특별소비세 (LGST)가 부과되는 경우; 또는
 - 납세자가 석유 및 가스산업의 PSC 계약자와 거래하는 경우.
 - f. 그룹내부 용역거래 및 무형자산의 거래를 위한 특정 요건의 개요를 서술한다. 규정 PER-32로 수정된 규정 PER-43에 따라 무형자산을 정의하고 원가분담약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 이전가격 문서 제출 법정기하는 없지만 세무서가 요청할 때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는 documentation in the tax audit 을 제공하기 위한 한 달 마감기한을 제공하고 있다. 약정 기간내에 완벽한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지 못 하면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이후 제출되는 문서를 무시하고 세무당국에 있는 데이터에 따라 납세의무를 결정한다.
- 규정 No. PER-22/PJ/2013 (이하 PER-22) 및 circular letter No. SE-50/ PJ/2013 (이하 SE-50)에 따라 감사 시 납세자 7근무일 내에 약정형식 (아래 참조함)에 특정정보를 기업하여 제공해야 한다. 회람문 SE-50 는 기능분석을 매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문서 중의 하나인 이전가격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법인세 신고 오류 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Special Relationship: Definition (특수 관계: 정의)

특수관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25%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한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2명의 납세자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 지분 관계는 없지만, 경영 참여나 기술사용(Use of Technology)을 통해 지배력(Control)이 존재하는 경우
- 직계 및 방계의 가족관계, 혈연관계 또는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개념은 OECD의 associated enterprise 개념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Associated enterprise 라는 개념은 기업들의 관계(under management and control)만을 다루지만 TP 규정에서 특수관계라는 개념은 기업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혈연관계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 포함한다.

Audits of Taxpayers with Special Relationships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전가격에의 초점을 한층더 강조하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지침으로 PER-22/PJ/2013 규정을 제정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동 규정은 제정전 착수한 세무조사에도 적용된다.

위에 언급한 규정은 Circular Letter No. SE-50/PJ/2013(SE-50)으로 보완하며 특수관계자의 세무조사관을 위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에 발행된 SE-04/PJ.7/1993를 대체한다. 이 규정은 다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이전가격 세무조사 단계 (즉, 준비 단계, 실시 단계, 보고 단계) 및 각 단계별 검토 정보.
- 납세자 상대방에 대한 정보 – 조세 피난처, 저세율국가의 상대방과의 거래.
- 매출총이익율 (gross margin), 총이익가산율 (gross mark-up), 영업 수익률 (operating margin), 총원가 가산율 (mark-up on total costs), 자산수익률 (return of assets), 사용자본수익률 (return of capital employed), 베리 비율 (berry ratio), 부채자본비율 (debt to equity ratio),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Ratio of R&D expense to sales), 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비율 (ratio of marketing expense to sales), 등 산업 (비교가능) 평균 재무비율을 쓰는 납세자의 예비조사
- Tested parties에 대한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수년간의 분석을 포함하는 이전가격방법 적용 가능한 세부 예시
- 무형자산의 이전. 5개의 규정된 이전가격 방법에 추가하여 정상가격기준을 test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
 - 비용 기반 방법
 - 소득 기반 방법

- 시장 기반 방법
- 그룹내부 자금조달 거래 - 그룹내부 자금조달 분석에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에 대한 가이드. 이 규정이 요청하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채자본비율 필요성 분석
 - 관계자 대출의 실체 발생여부 확인
 - 부채자본비율공정 평가
 - 정상가격기준
 - 이자비용의 정상가격범위 검증
- 주요 조정 이후 2차 조정에 대한 개념 소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쓰이는 양식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10 개의 양식 중 7개를 작성해야 하며 요청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양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양식	내용
A	정보 또는 증빙 요청서 - 이 양식은 국세청이 발행하는 양식으로써 증빙을 요청하는 문서의 양식을 제공한다. 이 양식에서는 납세자에게 7 근무일 제한 시간 이내에 요청에 답할 수 있다
B	Statement letter - 이 양식은 폼 C부터 폼 H까지에 있는 세무 감사관이 요청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첨부 양식이다.
C	관계자 간의 거래 - 이 양식은 납세자에게 거래유형, 거래 상대, 가격, 관계특성, 이전가격 방법 등 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한다.
D	재무제표 - 이 폼은 납세자에게 관계자와 제삼자 사이의 재무제표 양식을 제공한다.
E	Supply Chain Management Analysis - 이 양식은 납세자에게 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며 전체적인 관련 당사자들의 세부 사항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F	기능, 자산, 및 위험 분석 - 이 폼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자와 관계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G	특성 양식 - 이 폼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자의 관련 특성을 체크해야 한다.

양식	내용
H	비교가능성 분석 - 이 품에 따라 납세자는 제삼자와 관계자 간의 거래의 5가지 비교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 이 양식은 세무조사관에게 정보/ 설명/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지정한 일, 시간,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J	관계사 간 거래 관련 정보제공 회의록 - 세무조사 진행 회의록 기록양식이다.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상호합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4년 12월 22일에 MAP 시행과 관련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240/PMK.03/2014(PMK-240)을 새로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유효하며 동 규정의 발표 이전에 제출되어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은채 계속 진행되고 있는 MAP 신청건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MAP신청서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명기했던 타임라인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조세의 결과가 된 행동의 첫 통지일부터). 첫 통지일은 다음과 같다.

- a. 세금추징결정서일
- b. 소득세 원천 증거일
- c.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규정한 다른 때

납세자가 조세재판소에 불복해 항소해서 청문회가 충분하다고 여길 때 MAP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PMK-240 규정은 정부 규제 2011년 No. 74 (GR-74)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강화한다: MAP 신청 및 역내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납세자에게 부여.

이것은 이의신청, 조세재판소에 불복 청구, 잘못된 조세사정의 경감 또는 취소 신청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조세사정서를 발행한 후에 MAP이 상호 합의의 결과가 되지만 납세자가 이의신청 하지 않거나 세금부과의 경감 또는 취소 신청하지 않은 경우(또는 상기한 구제를 요청했지만 추후에 특정 요구 사항의 불충족으로 인한 취소)에 세금추징결정서를 변경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MAP이 상호 합의의 결과가 되며 납세자가 이의신청하지만 그 결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의결정에 상호 합의를 참작한다.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이의결정을 발행한 후에 MAP이 상호 합의의 결과가 되지만 납세자가 이의신청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했지만 추후에 취소되는 경우 이의결정을 참작한다.

MAP이 상호 합의의 결과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부과 및 결정은 효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 자가 MAP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인도네시아 국세청을 통한 인도네시아 거주자
2. 인도네시아 국세청; 또는
3. 조세조약 동반국가의 조세당국

규정은 MAP의 과정이 MAP Implementation Team에 의해 수행된다고 언급한다. 이 팀은 MAP 신청을 심사하며 증빙 서류 및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며 다른 활동을 이행하는 의뢰를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조세조약 동반국가의 조세조약과 직접 미팅, 전자 통신, 통신서류 등 협의도 수행할 것이다. 협의는 첫 협의 후에 3년 내에 주최되며 완성되어야 한다. 단, 국세청과 조세조약 동반국가의 조세당국의 동의를 통하여 연장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MAP 신청에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최고 수준의 보안하에 취급될 것이다.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2015년 1월 12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전가격 사전결정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APA)에 관련된 재무부 장관 규정 No. 07/PMK.03/2015 (PMK-7)을 발행했다.

이 규정은 2015년 4월에 발효된다. PMK-7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APA 원고를 국세청을 의해 아직 발행하지 않았으니 자동적으로 PMK-7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PMK-7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용	설명
신청자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납세자 또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납세자 외국납세자의 고정사업장(최소한 3년간 운영 또는 영업 활동)은 APA 신청할 자격이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인 외국에서 거주하는 납세자도 APA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	- 일방 - 3년 과세연도 - 쌍방 - 4년 과세연도
롤백기간	쌍방 APA에 관하여 APA는 상호합의의 내용에 따라 유효하다
마감기한	Pre-filing 신청서 제출 마감기한 - APA가 cover할 과세연도 시작까지 6개월 전이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인도네시아 조세당국은 pre-filing 단계 동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APA 정식신청 마감기한 - 국세청은 APA가 늦어도 cover할 과세연도 시작까지 1개월 전에 납세자에게 초대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Director of Tax Regulations II에게 늦어도 APA가 cover할 과세연도에 앞선 과세연도말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인도네시아어로 정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마감기한을 초과하는(1년 이상 아님) 경우 APA가 cover할 기간은 1년을 줄이게 된다. APA 정식신청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1년간 늦게 제출하는 경우 진행되지 못한다. APA 협의 마감기한 - 일방 APA는 정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부터 1년간의 제한시간이 있다. 아주 warrants 한 상황에 DGT가 1년간 연장시킬 수 있다. 쌍방 APA는 제공된 MAP에 마감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내용	설명
APA의 유효성	- 일방 APA는 APA 초안이 동의된 과세연도부터 유효하다. - 쌍방 APA는 상호 합의에 따라 유효하다.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	- Cover된 기간 동안 연차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는 늦어도 과세연도말 후 4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연차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APA는 검토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비밀준수	APA 기간 동안 납세자가 제출한 정보는 비밀리에 취급되며 다른 사람한테 공개는 금지된다. APA 요청은 국세청과 납세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더욱이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회계감사, 예비조사 또는 조세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없다.
Cover된 기간에 cover된 거래의 감사	- APA를 가지고 있거나 APA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국세청이 회계감사를 해도 된다. - 쌍방 APA인 경우에 국세청은 cover된 기간에 우선하는 세금법규에 따라 모든 과세 부과 통지서 또는 이의제기 결정서를 수정할 것이다
APA의 갱신	APA의 갱신은 cover된 마지막 과세연도에 신청될 수 있다. 갱신 요청은 fresh application에 의해 취급된다.

내용	설명
Miscellaneous	- PMK-7는 APA를 절차적으로 거친 과정으로 만들었다(APA협의팀 결성, 품질보증팀과 함께 APA협의팀의 추천의 검토). - APA협의팀은 국세청 내부인 및/또는 국세청이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이 규정에는 filing fees에 대한 설명은 없다. - PMK-7에 따라 국세청은 협의팀결성 및 품질보증팀 또한 APA의 개설 단계, 이행, 평가 및 갱신과 관련된 추가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 세관과 이전가격의 융합에 대한 설명은 동 규정에 없다.

부채비율

2016과세연도부터 부채비율이 4: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MK169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부채와 자본의 정의, 부채비율의 기준금액, 그리고 기타 의무준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소득세 섹션을 참조. (페이지17)



제9장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요

(Summary of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s)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일명 조세조약)에 서명했다. 여러 나라의 DTA 하에서의 다양한 감면세율과 고정사업장(PE) 기간 테스트를 요약한 표로 아래에 제시하였다.

DTA 하에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외국납세자는 Form DGT-1이나 Form DGT-2이라는 DGT가 발행한 특수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Form DGT-2는 은행 기관이나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회사 등을 위한 서식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Form DGT-1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서식에는 DTA 체약국의 세무당국이 보증(Endorse)하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COD)를 포함한다.

만일 외국납세자가 상기 서식에 보증(Endorsement)을 받을 수 없다면, 외국납세자는 DTA 체약국의 세무당국이 발행하거나 관용적으로 확인해주는 어떠한 형식의 COD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영어로 작성될 것
- 2010년 1월 1일 혹은 이후에 발행될 것
- 적어도 외국 납세자의 이름이 포함될 것
- 원본이나 사본이 원천징수 세무사가 등록된 세무당국에 의해 공인되어야 할 것
- 해당 문서에 관련 권한 있는 세무당국의 서명이 있을 것

상기 문서는 작성 완료된 Form DGT-1이나 Form DGT-2에 첨부될 것이다. 만일 외국납세자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DGT는 DTA 하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적용을 거부할 것이다.

No.	국가(1)	배당금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5) %	지분 양도 소득세 %	고정사업장 기간 테스트 (6) %
		사업체 직접 투자 (2)\	그 외%					
1	알제리	15	15	15	15	10	-	3 months
2	아르메니아	10	15	10	10	10	- or 5 ⁽²⁵⁾	6 months or 120
3	오스트레일리아	15	15	10	10 or 15 ⁽¹⁰⁾	15 ⁽⁸⁾	- or 5 ⁽²⁵⁾	120 days
4	오스트리아	10	15	10	10	12 ⁽⁸⁾	-	6 or 3 months
5	방글라데시	10	15	10	10	20 ⁽¹⁹⁾	- or 5 ⁽²⁵⁾	183 or 91 days
6	벨기에	10	15	10	10	10 ⁽¹⁸⁾	-	6 or 3 months
7	브루나이	15	15	15	15	10	-	3 months or 183 days
8	불가리아	15	15	10	10	15 ⁽⁸⁾	-	6 months or 120 days
9	캐나다	10	15	10	10	15	- or 5 ⁽²⁵⁾	120 days
10	중국	10	10	10	10	10	- or 5 ⁽²⁵⁾	6 months
11	크로아티아	10	10	10	10	10 ⁽⁸⁾	- or 5 ⁽²⁵⁾	6 or 3 months
12	체코	10	15	12.5	12.5	12.5	-	6 or 3 months
13	덴마크	10	20	10	15	15 ⁽⁸⁾	-	6 or 3 months
14	이집트	15	15	15	15	15	- or 5 (25, 26)	6 or 3 or 4 months
15	핀란드	10	15	10	10 or 15 ⁽¹¹⁾	15 ⁽⁸⁾	- or 5 ⁽²⁵⁾	6 or 3 months
16	프랑스	10	15	10 or 15 ⁽¹⁶⁾	10	10	- or 5 ⁽²⁵⁾	6 months or 183 days
17	독일	10	15	10	15, 10, 7.5 ⁽¹²⁾	10	-	6 months
18	헝가리	15	15	15	15	20 ⁽¹⁹⁾	-	3 or 4 months
19	홍콩	5	10	10	5	5 ⁽⁸⁾	5 ⁽²⁹⁾	183 days
20	인도	10	15	10	15	10 ⁽⁸⁾	-	183 or 91 days

No.	국가(1)	배당금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5) %	지분 양도 소득세 %	고정사업장 기간 테스트 (6) %
		사업체 직접 투자 (2)\	그 외%					
21	이란	7	7	10	12	7	- or 5 ⁽²⁵⁾	6 months or 183 days
22	이탈리아	10	15	10	10 or 15 ⁽⁷⁾	12 ⁽⁸⁾	-	6 or 3 months
23	일본	10	15	10	10	10 ⁽⁸⁾	-	6 months
24	요르단	10	10	10	10	20 ⁽¹⁹⁾	5	6 or 1 month(s)
25	북한	10	10	10	10	10	- or 5 ⁽²⁵⁾	12 or 6 months
26	남한	10	15	10	15	10 ⁽⁸⁾	-	6 or 3 months
27	쿠웨이트	10	10	5	20	10 ⁽²⁰⁾	-	3 months
28	독셈부르크	10	15	10	10 or 12.5 ⁽¹³⁾	10 ⁽⁸⁾	-	5 months
29	말레이시아 ⁽²⁴⁾	10	10	10	10	12.5 ⁽⁸⁾	- or 5 ⁽²⁵⁾	6 or 3 months
30	멕시코	10	10	10	10	10 ⁽⁸⁾	- or 5 ⁽²⁵⁾	6 months or 91 days
31	몽골	10	10	10	10	10	-	6 or 3 months
32	모로코	10	10	10	10	10	- or 5 ⁽²⁵⁾	6 months or 60 days
33	네덜란드 ⁽³²⁾	10	10	10 ⁽⁹⁾	10	10	-	6 or 3 months
34	뉴질랜드	15	15	10	15	20 ⁽¹⁹⁾	-	6 or 3 months
35	노르웨이	15	15	10	10 or 15 ⁽¹⁴⁾	15 ⁽⁸⁾	- or 5 ⁽²⁶⁾	6 or 3 months
36	파키스탄	10	15	15	15 ⁽¹⁵⁾	10	- or 5 ⁽²⁵⁾	3 months
37	파푸아뉴기니 ⁽³¹⁾	15	15	10	10	15	-	120 days
38	필리핀	15	20	10 or 15 ⁽¹⁷⁾	15	20	- or 5 ⁽²⁵⁾	3 or 6 months or 183 days
39	폴란드	10	15	10	15	10 ⁽⁸⁾	-	120 or 183 days
40	포르투갈	10	10	10	10	10	-	6 months or 183 days
41	카타르	10	10	10	5	10	-	6 months

No.	국가(1)	배당금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5) %	지분 양도 소득세 %	고정사업장 기간 테스트 (6) %
		사업체 직접 투자 (2)	그 외%					
42	루마니아	12.5	15	12.5	12.5 or 15 ⁽²¹⁾	12.5	-	6 or 4 months
43	러시아	15	15	15	15	12.5	-	3 months
44	세이셸	10	10	10	10	20	-	6 or 3 months
45	싱가포르	10	15	10	15	15 ⁽⁸⁾	5	183 or 90 days
46	슬로바키아	10	10	10	10 or 15 ⁽²²⁾	10	-	6 months or 91 days
47	남아프리카	10	15	10	10	20 ⁽¹⁹⁾	-	6 months or 120 days
48	스페인	10	15	10	10	10	-	183 days or 3 months
49	스리랑카	15	15	15	15	20	-	90 days
50	수단	10	10	15	10	10	-	6 or 3 months
51	수리남	15	15	15	15	15	-	6 months or 91 days
52	스웨덴	10	15	10	10 or 15 ⁽¹²⁾	15	-	6 or 3 months
53	스위스	10	15	10	10 ⁽¹²⁾	10 ⁽⁸⁾	-	183 days
54	시리아	10	10	10	15 or 20 ⁽¹⁴⁾	10	-	6 months or 183 days
55	대만	10	10	10	10	5 ⁽⁸⁾	-	6 months or 120 days
56	태국	15	20	15	15	20 ⁽¹⁹⁾	5	6 months or 183 days
57	튀지니	12	12	12	15	12 ⁽⁸⁾	-	3 months
58	터키	10	15	10	10	10 ⁽⁸⁾	- ⁽²⁷⁾	6 months or 183 days
59	아랍에미리트	10	10	5	5	5	-	6 months
60	우크라이나	10	15	10	10	10 ⁽⁸⁾	- or 5 ⁽²⁵⁾	6 or 4 months
61	영국	10	15	10	10 or 15 ⁽¹⁸⁾	10 ⁽⁸⁾	-	91 or 183 days
62	미국	10	15	10	10	10 ⁽⁸⁾	-	120 days

No.	국가(1)	배당금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5) %	지분 양도 소득세 %	고정사업장 기간 테스트 (6) %
		사업체 직접 투자 (2)	그 외%					
63	우즈베키스탄	10	10	10	10	10 ⁽⁸⁾	-	6 or 3 months
64	베네수엘라	10	15	10	10 or 20 ⁽²³⁾	10 ⁽⁸⁾	- or 5 ^(25,26)	6 months
65	베트남	15	15	15	15 ⁽¹⁵⁾	10	- or 5 ⁽²⁵⁾	6 or 3 months
66	짐바브웨	10	20	10	15	10 or 5 ⁽³⁰⁾	- or 5 ⁽²⁵⁾	6 months or 183 days

(주) DTA 원천징수세율과 고정사업장 기간 테스트에 대한 요약:

1. 상기 표는 현행 조세조약을 요약한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보려면 관련 조약을 참조하라.
2. 이러한 세율은 주주가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낮은 세율은 수령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Paying Company)의 지분을 25% 이상(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의 경우 10%) 보유한 경우(일본의 경우 의결권을)에 적용한다. 대만의 경우 15%가 산업적 프로젝트에 관여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적용되며 20%는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체코 공화국,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경우 수령인이 배당금 지급하는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통제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 수령인이 의결권의 15% 이상을 통제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3. 이러한 세율은 수령인이 이자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스위스를 제외하고 조약에서 특별히 언급된 금융기관이나 은행, 중앙은행과 정부에 금액이 지불될 경우, 이자 원천 징수 과세가 면제된다.
4. 이러한 세율은 수령인이 로열티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브루나이 정부에 지불되는 로열티는 면제된다.
5. 벨기에와 필리핀은 실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 밖의 모든 나라는 세후이익 총액에 대해 부과된다.
6. 두 가지 기간이 제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긴 기간이 대지 건물, 건축, 조립이나 설치 프로젝트, 그 밖의 것과 연계된 감독 서비스에 적용되며 짧은 기간은 컨설팅이나 다른 서비스에 적용된다. 각 나라의 활동별 PE 기간 테스트의 세부사항을 보려면, 다음 Section에 있는 표를 참조하라.
7. 10% 세율은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나 경험에 관한 정보나 그 이용에 대한 로열티에 적용된다. 15% 세율은 기타 모든 경우의 로열티에 적용된다.
8.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결한 석유 및 가스나 광업 부문의 PSC와 광업 도급계약(CoW)(혹은 유사한 계약)에 대한 지점세 적용에 관해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한다.
9. 조세조약의 조항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0%까지 감면될 수 있다. 가령,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2년 이상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9년 11월 5일자로 발표된 PER-62/PJ/2009 규정에 따르면, DGT는 양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기 위한 절차에 합의하기 전까지 동 조항이 인도네시아에서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한 2005년 6월 1일 자 Circular Letter No.SE-17/PJ/2005를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이자에

-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명확히 하여야 한다.
- 10.10% 세율은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에 적용된다. 15% 세율은 기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 11.10% 세율은 영화 필름, 필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위한 테이프를 포함해, 문학과 예술 작품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15% 세율은 기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 12.15% 세율은 저작권, 특허, 트레이드마크, 시크릿 포물러, 문학 및 예술 작품, 디자인에 적용된다. 10% 세율은 산업적, 사업적, 과학적 장비나 경험에 관한 정보 혹은 이용 권한/이용에 적용된다. 7.5% 세율은 기술, 관리, 컨설팅 서비스에 적용된다(독일).
 - 13.10% 세율은 기술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에 적용된다. 12.5% 세율은 로열티에 적용된다.
 - 14.10%(샤리아의 경우 20%) 세율은 특허, 트레이드마크, 시크릿 포물러, 문학 및 예술 작품, 디자인, 산업, 사업, 과학적 장비나 경험에 관한 정보 혹은 이용 권한/이용에 적용된다. 15% 세율은 저작권에 적용된다.
 - 15.15% 세율이 기타 모든 경우의 로열티와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적용된다.
 - 16.농경, 플랜테이션,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산업, 교통, 저비용 주택 공급 프로젝트, 관광, 인프라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 금융기관 혹은 은행에서 이자가 지급되거나 은행이나 다른 기업에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유형의 부채에 대한 이자의 경우 15%가 적용된다.
 - 17.채권, 채무 증서나 유사한 계약에 대한 이자의 경우 10%, 다른 유형의 부채에 대한 이자의 경우 5%가 적용된다.
 - 18.10% 세율은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를 이용할 권리나 그 이용에 대한 로열티에 적용된다. 15% 세율은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디자인이나 모델, 트레이드마크, 계획, 시크릿 포물러, 프로세스에 대한 로열티에 적용된다.
 - 19.조세조약에 세율이 나와 있지 않다. 국제청은 이를 인도네시아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즉, 20%)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20.이익이 발생한 후 12개월 내 본점으로 이익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 21.12.5% 세율은 특허, 트레이드마크, 시크릿 포물러, 디자인, 산업, 사업, 과학적 장비나 경험을 이용할 권한이나 그 이용 시 적용된다. 15% 세율은 저작권에 적용된다. 또한 루마니아-인도네시아 조세조약 12조에 따라, 수수료 관련 모든 지급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된다.
 - 22.10% 세율이 영화 필름, 텔레비전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필름이나 비디오, 라디오 방송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테이프를 이용할 권리나 그 이용 시 적용된다. 15% 세율은 기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 23.10% 세율은 기술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에 적용된다. 20% 세율은 기타 모든 경우의 로열티에 적용된다.
 - 24.말레이시아의 세율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조세조약을 수정하여 새롭게 체결한 약정(Protocol)에 근거한 것이다. 동 약정은 2010년 7월 15일에 발효되었고 2010년 9월 1일 이후에 원천징수 되거나, 공제되거나, 납부되어 징수된 세금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은 1990년 말레이시아 라부안 근해 사업 활동법에서 정의된 대로, 라부안 근해에서 수행된 사업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5.자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5% 세율이 적용된다.
 - 26.회사 내 특정비율의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주식 양도의 경우 5% 세율이 적용된다.
 - 27.양수와 양도 간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 28.조세협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 29.5%의 세율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으로부터 파생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30.회사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 합병, 분할 또는 유사한 운영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의 양도
- 31.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부동산에서 파생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
- 32.10% 세율은 인도네시아에, 50% 세율은 짐바브웨에 적용된다.
33. 본 조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 34.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 조세조약 및 프로토콜에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토콜에 수정된 비율은 배당금의 5%/10%/15% 그리고 2년간 이상 대출 또는 산업, 상용 또는 과학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된 지불의 이자의 5%(이전에 원천징수율은 0로 감감될 수 있었음)이다.
- 35.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율은 2017년1월1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반면, 2017년1월1일부로 새로이 적용되는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은 배당의 경우 10%, 로열티 및 기술서비스의 경우 10%, 지점이윤세의 경우 15%이다.

Permanent Establishment Time Test (고정사업장 기간 테스트)

인도네시아 내에서 특정기간을 초과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개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은 관련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특정활동에 대한 특정기간을 요약한 것이다.

No.	국가	건설	설비	제조	감리	그 외 업종
1	알제리	3달	3달	3달	3달	3달
2	아르메니아	6달	6달	6달	6달	120일
3	오스트레일리아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20일
4	오스트리아	6달	6달	6달	6달	3달
5	방글라데시	183일	183일	183일	183일	91일
6	벨기에	6달	6달	6달	6달	3달
7	브루나이	183일	3달	3달	183일	3달
8	불가리아	6달	6달	6달	6달	120일
9	캐나다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0	중국	6달	6달	6달	6달	6달
11	크로아티아	6달	6달	6달	6달	3달
12	체코	6달	6달	6달	6달	3달
13	덴마크	6달	3달	3달	6달	3달
14	이집트	6달	4달	4달	6달	3달

No.	국가	건설	설비	제조	감리	그 외 업종
15	핀란드	6달	6달	6달	6달	3달
16	프랑스	6달	-	6달	183일	183일
17	독일	6달	6달	-	-	-
18	헝가리	3달	3달	3달	3달	4달
19	홍콩	183일	183일	183일	183일	183일
20	인도	183일	183일	183일	183일	91일
21	이란	6달	6달	6달	6달	183일
22	이탈리아	6달	6달	6달	6달	3달
23	일본	6달	6달	-	6달	-
24	요르단	6달	6달	6달	6달	1달
25	북한	12달	12달	12달	12달	6달
26	남한	6달	6달	6달	6달	3달
27	쿠웨이트	3달	3달	3달	3달	3달
28	룩셈부르크	5달	5달	5달	5달	-
29	말레이시아	6달	6달	6달	-	3달
30	멕시코	6달	6달	6달	6달	91일
31	몽골	6달	6달	6달	6달	3달
32	모로코	6달	-	6달	6달	60일
33	네덜란드	6달	6달	6달	6달	3달
34	뉴질랜드	6달	6달	6달	6달	3달
35	노르웨이	6달	6달	6달	6달	3달
36	파키스탄	3달	3달	3달	3달	-
37	파푸아뉴기니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20일
38	필리핀	6달	3달	3달	6달	183일
39	폴란드	183일	183일	183일	183일	120일
40	포르투갈	6달	6달	6달	6달	183일
41	카타르	6달	6달	6달	6달	6달
42	루마니아	6달	6달	6달	6달	4달
43	러시아	3달	3달	3달	3달	-

No.	국가	건설	설비	제조	감리	그 외 업종
44	세이셸	6달	6달	6달	6달	3달
45	싱가포르	183일	183일	183일	-	90일
46	슬로바키아	6달	6달	6달	6달	91일
47	남아프리카	6달	6달	6달	6달	120일
48	스페인	183일	183일	183일	183일	3달
49	스리랑카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50	수단	6달	6달	6달	6달	3달
51	수리남	6달	6달	6달	6달	91일
52	스웨덴	6달	6달	6달	6달	3달
53	스위스	183일	183일	183일	183일	-
54	시리아	6달	6달	6달	6달	183일
55	대만	6달	6달	6달	6달	120일
56	태국	6달	6달	6달	6달	6달
57	튀지니	3달	3달	3달	3달	3달
58	터키	6달	6달	6달	6달	183일
59	아랍에미리트	6달	6달	6달	6달	6달
60	우크라이나	6달	6달	6달	6달	4달
61	영국	183일	183일	183일	183일	91일
62	미국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20일
63	우즈베키스탄	6달	6달	6달	6달	3달
64	베네수엘라	6달	6달	6달	6달	-
65	베트남	6달	6달	6달	6달	3달
66	짐바브웨	6달	6달	6달	6달	183일

제 10 장 조세사면 (Tax Amnesty)

거의 1년여에 걸친 논쟁끝에 2016년7월1일부로 조세사면법이 발효되었다.

조세사면은 2015과세연도까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곧 납세자가 과거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미신고된 자산을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 제도는 인도네시아 개인 및 법인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조세사면 적용기간별 세율

조세사면의 신청기간은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3월31일까지이다.

일반납세자	2016년7월1일 ~ 2016년9월 30일	2016년10월 1일 ~ 2016년12월 31일	2017년1월1일 ~ 2017년3월 31일
역외 미송환자산	4%	6%	10%
역내자산 혹은 역외 송환자산	2%	3%	5%

소액납세자	총자산이 100 억루피아 이하인 경우	총자산이 100 억루피아 초과인 경우
수익: 48억 루피아 이하	0.5%	2%

중소기업 우대세율은 연간 수익이 48억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동 우대세율은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의사, 공증번호사, 회계사, 건축기술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에게는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3월31일의 기간내에 인도네시아 세무서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현금성자산은 명목가치로 보고되어야 하는반면, 비현금성자산은 공정가치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때 공정가치는 납세자의 평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송환자산

역외 송환자산은 인도네시아 내의 아래와 같은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 국채
- 공채
- 지정된 은행에 대한 금융투자
- OJK가 감독하에 있는 회사채
- 정부 관련 인프라프로젝트
-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부문
- 기타 법에 기초한 투자

역외 송환자산은 최소 3년간 인도네시아내에 있어야하며, 역내자산은 최소3년간 인도네시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납세자가 해외소재 인도네시아 은행 지점을 통해 역외자산을 반입하려는 경우, 동 해외지점에 자산을 맡긴 시점으로부터 3년간은 인도네시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 경우 동 해외지점은 반드시 다음 영업일에 자산을 인도네시아로 송부하여야 한다. 대금수수 및 자산송부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

조세사면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조사통지서상의 고지금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특수목적회사가 소유한 자산

특수목적회사는 구매 및 투자 등과 같이 오직 설립자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특수목적회사가 소유한 자산은 관련 부채와 함께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은 자산목록신고서에, 부채는 부채목록신고서를 통해 신고한다. 부채는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가치의 각각 75% (법인인 경우) 및 50% (개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수목적회사가 청산하는 경우로서 인도네시아 역내자산인 경우, 조세사면시 세율은 역내세율을 적용한다.

특수목적회사가 청산되면, 인도네시아 내의 토지나 건물, 혹은 주식은 조세사면을 신청하는 납세자의 명의로 이전되어야 한다.

토지, 건물 및 주식의 양도

증서를 획득한 납세자는 토지, 건물 및 주식 등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및 주식은 2015과세연도 이전 시점에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 건물 및 주식의 명의변경으로 인한 소득세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면제통지서(SKB)를 발행받은 후에 면제될 것이다.

2015과세연도 수정신고 및 가산이자의 면제

2015과세연도에 대한 조세사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초과납부로 인한 환급액은 더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차기과세연도 납세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동 수정으로 인한 가산이자 면제된다.

조세사면 미신청자에 대한 시사점

과세당국이 조세사면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1985년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있었던 미신고자산의 취득 거래를 포착하게 되는 경우, 관련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세 과소신고통지서를 발행하게 된다.

세무조사 면제

조세사면을 신청한 납세자는 2015년과 그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Contacts

If you have any queries, please correspond with your usual contact within Deloitte Tax Solutions or with any one of the following tax professionals: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mehimawan@deloitte.com
Carlo Llanes Navarro	Senior Technical Advisor – Transfer Pricing	canavarro@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ax Partner	rkiantiong@deloitte.com
Heru Supriyanto	Tax Partner	hsupriyanto@deloitte.com
Cindy Sukiman	Tax Partner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Tax Partner	ddamij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Tax Partner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Tax Partner	jlauwrenz@deloitte.com
Turmanto	Tax Partner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Tax Partner	yhardyana@deloitte.com
Heru Widayanto	Tax Director	hwidayanto@deloitte.com
Liana Supandi	Tax Director	lsupandi@deloitte.com
Reggy Widodo	Tax Director	rwidodo@deloitte.com
Roedy Andrianto	Tax Director	randrianto@deloitte.com
Soenari Chasan	Tax Director	csoenari@deloitte.com
Vivi Karwito	Tax Director	vkawito@deloitte.com
Balim	Tax Director –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Amit Sharma	Technical Advisor – Transfer Pricing	asharma2@deloitte.com
Shivaji Das	Technical Advisor – Transfer Pricing	shivdas@deloitte.com
Koji Sugimoto	Technical Advisor	kojisugimoto@deloitte.com
Wisesasari	Tax Director	wisesasari@deloitte.com

Notes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Deloitte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throug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bringing world-class capabilities, insights, and high-quality service to address clients'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To learn more about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45,000 professionals make an impact that matters, please connect with us on Facebook, LinkedIn, or Twitter.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290 partners and over 7,4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subsidiaries and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ax Solutions.